

(검) (역) (정) (보)

표지역 식물보호협정가입

방관아닌 主體로서의 역할 기대

국립식물검역소 검역과 농림기좌 유 기 열

우리나라는 81년 11월 4일자로 아시아 태평양지역 식물보호협정(Plant Protection Agreement for the Asia and Pacific Region)에 가입하였다. 따라서 본협정의 우리나라 가입경위와 협정의 내용등을 살펴봄으로써 본협정의 이행에 따른 우리나라의 이 지역내 식물보호 및 식물검역분야에 있어서의 역할과 진로설정은 물론 관계자 여러분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방제기술 정보신속입수가능

우리나라와 이 지역 국가간의 연간 수출입식물 교역량은 수출은 7만 2천여건으로 전체의 73%에 이르고 물량은 곡류등은 7만 5천여톤(약 77%), 묘목류등은 1천 24만 3천여

개(약 66%)이다. 수입은 1만 8천여건으로 전체의 88%를 상회하며 물량은 목재류등은 4백 58만 1천여 m³(약 76%), 묘목류등은 3백 37만 4천여개(약 60%)를 차지하고 있어 식물검역적 차원에서 이 지역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러므로 본 협정에 우리나라가 가입한 것은 우리나라와 이 지역 식물보호업무발달에 큰 의의가 있는 것이다.

본 협정에 가입함으로써 우리나라는 ▲ 각종식물보호 및 식물검역사업에 대한 공동 및 개별조치의 의무 ▲ 집행위원회 위원피선 및 선출의 권리의무 및 ▲ 조사정보자료 수령 권리를 얻게되며 우리나라의 식물보호 및 식물검역의 국제협력강화 증진, 이 지역내에서 발생하는 유해식

■ 亞太지역 식물보호협정 가입 ■

물병해충에 대한 분포 및 발생현황과 방제기술등 각종정보의 신속한 입수, 문제병해충의 국내발생시 방제를 위한 지역협력을 통한 방제효과제고 그리고 식물검역요원의 기술훈련강화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68년 관계관 방문으로 가입논의

우리나라의 본협정 가입문제가 거론된 것은 1968년 11월 17일에 당시 동남아시아 태평양지역 식물보호위원회(Plant Protection Committee for the South East and Pacific Region)의 집행간사겸 지역식물보호관인 Dr. D. Bap Reddy씨가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본협정의 설립배경과 연혁 그리고 우리나라의 가입필요성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의무부 조약과장 및 관계관과 가입문제에 대한 예비협의회를 가진데서 비롯되었다.

가입타당성 검토보고서 작성

그후 가입에 대한 별다른 진전이 없다가 1980년 6월 25일에 이태리주재 한국대사관은 WIT-0631에 의거 본협정에 대한 관계자료를 수집, 송부해왔으며 FAO당국이 우리나라의 본협정 가입을 희망고 있음을 인지하였다. 국립식물검역소는 국협 630

-394 ('80. 8. 2)에 의거 송부자료 및 각종정보를 근거로 우리나라의 본협정 가입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80년 8월 8일자로 우리나라가 본협정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검토의견서를 농수산부에 제출하였다. 같은 해인 '80년 8월 10일 ~ 8월 15일까지 FAO 아태(亞太)지역 사무소 부소장(Deputy Regional Representative FAO Regional Office)인 Dr. D. Bap Reddy씨가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당시 농수산부 조익태 농산국장, 국립식물검역소 하재규 소장 및 관계관과 본협정의 우리나라 가입문제를 협의하고 우리나라가 본협정에 가입하는 것이 쌍방에 유익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으며 제12차 아시아 태평양 식물보호위원회 총회에 우리나라가 참석해줄 것도 권유받았다.

총회에 참석, 가입제의 받아

이에 따라 '80년 10월 27일~11월 3일까지 태국의 [치앙마이]에서 개최된 제12차 총회에 하재규 소장과 김병호 인천지소장이 참석하였으며 총회 중 식물보호위원회측으로부터 우리나라의 본협정 가입문제를 제의받고 이 문제에 대하여 상호 충분한 의견교환을 하였다.

23번째 회원국으로 가입

본 협정의 우리나라 가입문제가 관계기관에서 활발히 논의되기 시작하자 국립식물검역소는 '80년 9월 19일에 본 협정의 번역문을 그리고 '81년 7월 3일에는 본 협정 부록 A, B의 번역문을 농수산부 및 관계기관에 제출하였고 관계기관에서는 앞서 제출한 검토의견서와 이 협정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81년 10월 19일자로 우리정부는 FAO 사무총장에게 우리나라의 본 협정 가입문서를 기탁하였다. FAO 사무총장은 동가입문서를 '81년 11월 4일자로 접수하고 본 협정 제10조 제 3항에 따라 우리나라가 '81년 11월 4일자로 본 협정에 가입되었음을 '81년 11월 16일자로 우리정부에 알려오게 됨으로써 우리나라는 본 협정의 23번째 회원국이 된 것이다.

FAO 이사회에서 승인한 협정

본 협정은 국제식물보호협약 제 3조(보충협정) 및 제 8조(지역식물보호기구)에 의거 ▲ 적절한 식물보호 조치에 의한 식물유해병해충의 지역내 유입 및 만연방지, ▲ 식물보호 및 검역업무의 강화 ▲ 식물보호분야에 있어서 회원국간의 지역협력증진 및 ▲ 이 지역내의 식물보호활동

의 조정을 하기위한 목적으로 1955년 11월 26일에 FAO 이사회에서 승인되어 이듬해인 1956년 7월 2일자로 발효되었다.

최초에는 10개 회원국가임

체결당시의 회원국은 호주, 스리랑카 등 10개국이었으나 1982년 1월 현재 총회원국은 24개국에 이르고 있으며 회원국 중 영국, 프랑스, 포르투갈은 본 협정 제 1조(정의) 제 1항의 아시아 태평양지역에 속하지 않지만 본 협정 제10조(서명과 가입) 제 1항에 명시한 「지역내의 영역에 대하여 국제관계의 책임이 있는 정부자격」으로 회원국이 되었으며 회원국은 다음과 같다.

한국, 호주, 스리랑카, 영국, 라오스, 인도네시아, 포르투갈, 베트남, 인도, 태국, 프랑스,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버마, 필리핀, 베네티, 캄보디아, 피지, 서사모아, 방글라데시, 뉴우질랜드, 파푸아뉴기니아, 소로몬제도, 통가,

사무소는 태국의 방콕에 위치

본 협정 제 2조(지역위원회)에 의거 아시아 태평양 식물보호위원회(Asia and Pacific Plant Protection Commission)가 1956년에 설립되었고 사무소는 태국의 방콕에 위치하고 있다.